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3년 6월 2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(주)코람코자산신탁
(영문명) Koramco REITs Management and Trust Co., 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koramco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4F
(전 화) 02-787-0000

대 표 이 사 : 정 준 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지원실장
(성 명) 김 열 홍 (전 화) 02-787-0019

작 성 자 : (직 책) 팀 원
(성 명) 유 선 웅 (전 화) 02-787-0089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민사소송 등의 발생

1. 패소 등의 내용	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복합시설 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과 관련하여 제1순위 및 제2순위 우선수익자 중 5인(신항스톤(주)외 4)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, 당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28,898,027,79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됨(당사의 지급의무는 두류홀딩스(주), 다인건설(주), 두류홀딩스(주)의 대표이사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와 부진정 연대 관계임)
2. 손실금액(원)	28,898,027,793 원 및 지연손해금
3. 손실발생일	2023. 06. 02
4.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	- 위 손실금액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(4,500억원)의 1%(45억)를 초과 - 추가 충당금 설정
5. 조치내용	항소 제기 예정
6. 조치계획(향후일정 등)	항소심 진행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 당사는 본건 판결에 따른 판결금에 대하여 추가 충당금 설정 - 상기 손실발생일 및 결정(확인)일은 판결문 수령일로서, 금액 등 충당금 설정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 - 본건 판결은 당사가 28,898,027,793 원 (및 지연손해금)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나, 추후 진행될 항소심 등 결과에 따라 손실이 없거나 손실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공시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주2) 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